

대여금고 약관

제1조 (보관대상)

- ①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폭발물, 인화성 물질, 폭발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액체류 등 물질,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물질 및 기타 위험한 물건 등 은행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변질될 수 있는 부패성 물질 등 은행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2조 (대상 고객 및 계약 기간)

- ① 본 약관에 정한 대여금고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한다.
- ② 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0일전 은행은 고객이 제1항에 정한 기준에 부합 되는지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인감·서명 등 신고)

거래처는 대여금고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또는 지문) 및 비밀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려고 할 때는 대리인도 위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열쇠 또는 카드의 보관 및 사용)

- ① 대여금고, 열쇠(카드 포함, 이하 같다)는 거래처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② 예비용 열쇠는 은행 직원이 보는 데서 봉투에 넣고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봉인하여 은행(본점)에 보관한다.
- ③ 은행이 화재·천재지변,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과 금고수리, 기타 은행사정에 따라 부득이 대여금고를 열어야 할 때는 예비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여금고의 이용)

- 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의 제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이용절차를 거친 후 거래처용 열쇠(또는 카드)를 사용한다.
- ② 거래처는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이용시간)

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등)

- ① 제9조에 정한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이 해지 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처가 보관물품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 사전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비용(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비용 포함)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

③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은행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거래처에 사전 통지나 안내 없이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건을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거래처는 이러한 경우 은행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임의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을 취소불능조건으로 확약한다. 또한 임의처분에 따른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처분 비용 이외에 은행에 여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은행은 지점의 위치변경, 폐쇄 등 대여금고 전체를 이동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거래처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새로운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및 수수료)

거래처는 보증금이나 수수료 없이 이용한다. 하지만 거래처의 부주의이나 과실로 인해서 대여 금고 시설의 파손(열쇠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처는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 (거래해지사유)

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래처가 해지를 신청한 때
2. 거래처가 사망한 때
3. 거래처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거래처가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거래처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은행 예금평잔 등 거래처의 거래실적이 은행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7. 은행이 대여금고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8. 은행이 보관 도중에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② 은행이 제①항 3호, 4호, 5호, 6호, 7호 및 8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거래처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

③ 해지 때 거래처는 이용열쇠를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못한 때는 은행에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제1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대여금고 열쇠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 도난, 손상하거나, 비밀번호를 망각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 도난, 손상하거나 비밀번호를 망각하여 자물쇠와 열쇠를 바꾼 때 그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한다.

제11조 (대여·양도금지 등)

① 대여금고의 이용권리는 대여·양도할 수 없다.

② 거래처는 거래처가 이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면책)

- ①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거래처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어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래처에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거래처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거래처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면 되며, 거래처가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